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43
----------	------

2017년 2월 2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8일, 신언근 의원(찬성자 23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2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언근 의원)

가. 제안이유

소방이 출동하는 현장에는 일상적인 사고현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는 “재난” 현장에만 국한되어 있음. 이에 일반 사고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책임회피 및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시장에게 현장지휘관이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시행토록하고, 현장지휘관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 함.(안 제3조 및 제4조)
- 3)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지휘범위와 활동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4)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토록 하고, 긴급구조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의 임무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5)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 발생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가 필요할 경우 현장지휘관은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자치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토록 규정함. (안 제7조)
- 6) 현장지휘관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원활한 현장인계를 위해 적극 협력토록 함. (안 제8조)

7) 상황이 종료된 이후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해 평가토록 규정함. (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조례안은 소방출동 현장에는 ‘법정 재난현장¹⁾’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고현장’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는 ‘법정 재난현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 밖의 ‘일상적인 사고현장’의 경우 관련기관 간 책임회피 및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일상적인 사고현장을 포함한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관련기관 간 명확한 협업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재난 발생 및 긴급구조체계 현황

○ 최근 3년간 서울시 재난사고 발생현황(일상적인 사고 포함)을 살펴보면 연평균 643,707건(일평균 1,763건)의 사고 및 재난 대응활동이 이루어졌음. ([표 1]참조)

[표 1] 최근 3년간 사고 및 재난 대응활동 출동 현황

구 분	계(건수)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비고
2016년 (전년대비)	669,607 (↑4.6%)	6,443 (↑8.8%)	134,917 (↑5.8%)	528,247 (↑4.3%)	
2015년 (전년대비)	639,948 (↑3.0%)	5,921 (↑1.8%)	127,481 (↓2.9%)	506,546 (↑4.6%)	
2014년	621,566	5,815	131,257	484,494	
계	1,931,121	18,179	393,655	1,519,287	
평균	643,707	6,059	131,218	506,429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이처럼 다양한 사고 및 재난 발생 상황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법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등에 근거하여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재난사고현장 비상발령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시행하고 있으며, ([표 2]참조)

[표 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사고현장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화재 (인근 건물로 연소 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8h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시설물 등²⁾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장소 재난(단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발령권자 (소방서장) ※ 서장부재시 현장지휘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 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 상황) 	현장대응 시간 8h~24h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시 ○ 다중이용 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발령권자 (본부장, 본부지휘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20명 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 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시간 24h 이상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³⁾,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이용 장소의 재난으로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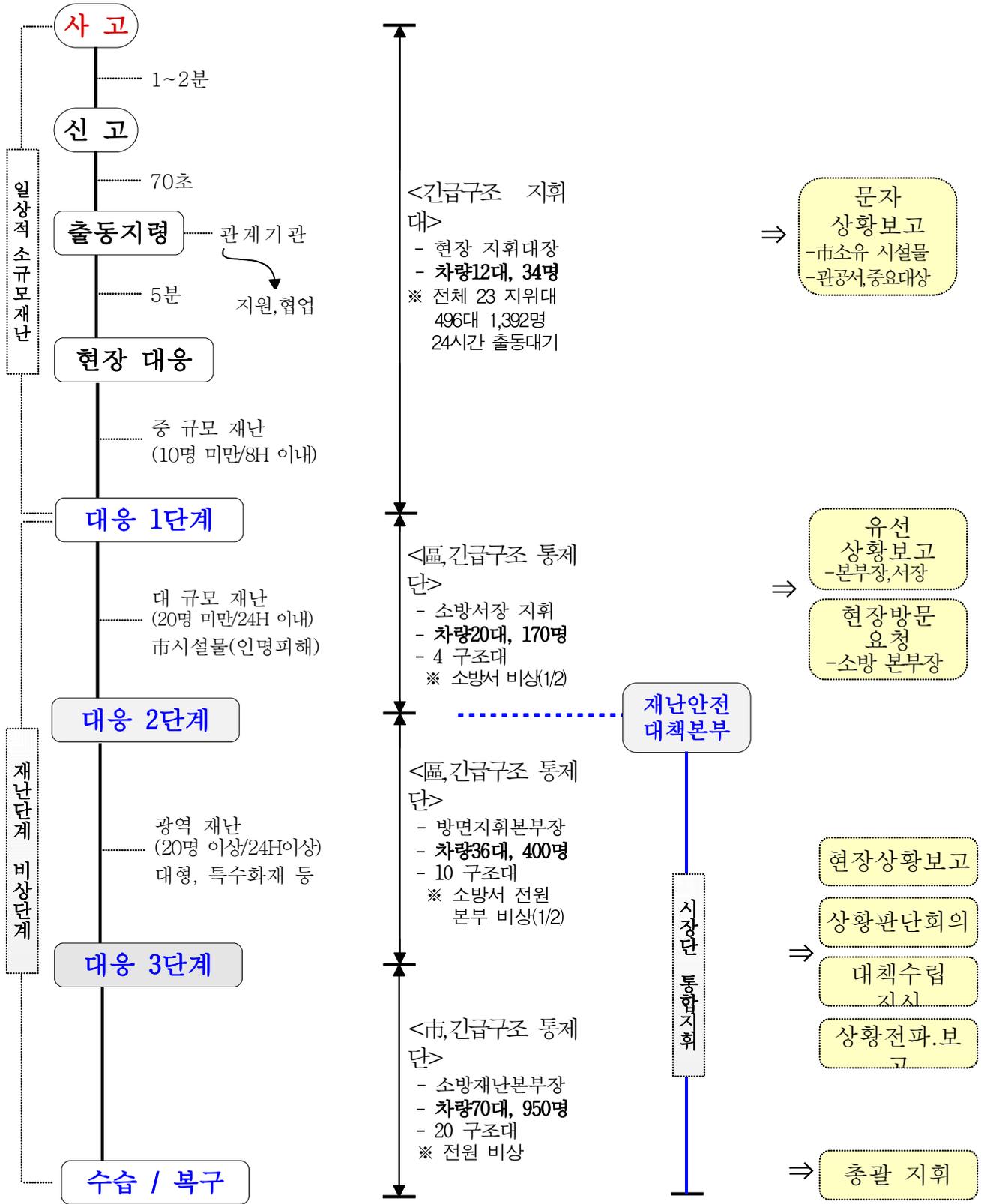
- 여기서, 대응1단계, 2단계의 경우는 자치구 긴급구조 통제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3단계는 시 긴급구조 통제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1]참조)
- 그러나 실제 이러한 운용기준은 법정 재난현장에서는 잘 작동되지만 법정 규모 이하의 '낙원상가 붕괴사고(' 17.1.7)'등과 같은 소규모 사고 현장에서는 소방재난본부(긴급구조기관)와 자치구 등 관련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종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2) 『공공 시설물 등』이란, 시 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3)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을 말함.

대응PROCESS

대응조직

보고체계



[그림 1] 서울시 재난현장 대응 PROCESS

■ 주요골자별 의견

가.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고 및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앞서 언급했듯이 법정 규모 이하의 재난사고 현장까지도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업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리라 사료됨.

나. 용어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운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관’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사고 및 재난현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9조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제1통제선과,
- 구조·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제2통제선을 포함하는 개념임. ([그림 2] 참조)



[그림 2] 통제구역 개념도

- 그리고 ‘현장지휘관’은 대응단계별 상황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지정하고 있는데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지정을 통해 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지휘체계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표 1] 안 제2조 관련 대응단계별 현장지휘관 지정 현황

단 계 별	지휘권자
신고 ~ 대응1단계 전	마. 선착대장 : 현장에 최초 도착하는 소방대의 장 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담당팀장 (1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대장)
대응1단계	다.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관할 소방서장 (2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대장, 관할소방서장)
대응2단계	나.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또는 방면지휘본부장 (3단계 발령권자: 소방재난본부장)
대응3단계	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다. 시장 및 현장지휘관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현장지휘관이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평가한 결과를 다음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서’에 반영토록 한다는 측면에서 긴급구조 및 지휘체계 확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는, 현장지휘관이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대응 유연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되나,
 - 자칫 현장지휘관의 오판(誤判)으로 인한 재난 및 피해의 확대도 염려되는 바, 소방재난본부는 평상시 현장지휘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한 상황판단교육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하겠음.

라. 현장지휘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지휘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현장지휘관이 통합지휘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때 긴급구조지원기관⁴⁾은 통합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 7. 생략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제1항의 경우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지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혼란 없이 신속한 지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2항의 경우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현장통합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토록 함으로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마. 긴급구조지원활동 (안 제6조)

- 안 제6조는, 긴급구조지원활동과 관련해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요청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된 연락관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자원요청 등 긴급구조지원활동에 관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은 본 조례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재난대응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바. 통합지원본부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 발생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가 필요할 경우 현장지휘관은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자치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토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5)에 따르면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의 부단체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 현장지휘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일부 기관에서 법정 재난현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상적인 사고 현장에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 안 제7조에 근거해 법정 재난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고현장에서도 현장지휘관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치구에 통보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해 그 동안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 지휘권이양 (안 제8조)

- 안 제8조는, 현장지휘관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⁶⁾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 ② 생략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2.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과 협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의 부단체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⁷⁾(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원활한 현장인계를 위해 적극 협력토록 하고 있음.

- 이는 현장지휘관에 의해 현장 활동이 종료되었더라도 2차적인 사고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원활한 현장수습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아. 기록유지 및 현장활동 평가 (안 제9조, 제10조)

- 안 제9조는, 현장지휘관에게 현장 활동사항에 관하여 활동일지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안 제10조는 현장지휘관은 현장 상황이 종료된 이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해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장에 대한 기록 및 평가 유지를 통해 사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안 제3조에서 언급한 ‘긴급구조대응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긴급구조 및 지휘 체계 확립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결 론

- 본 조례안은 법정규모는 물론 그 이하의 소규모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도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유관기관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 그 동안 법정규모 이하의 일상적인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미가 크다 하겠음.
- 다만, 소방재난본부와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각종 현장대응활동 과정에서 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시민의 생명보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헌신적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및 재난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한 제2통제선 내와 총리령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현장지휘관”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재난본부장

나.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또는 방면지휘본부장)

다.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관할 소방서장

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담당팀장

마. 선착대장 : 현장에 최초 도착하는 소방대의 장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지휘관이 효과적으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1. 인명의 탐색·구조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 배치와 임무부여

3. 추가 사고 및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 관리 및 자원봉사자의 배치
6. 현장통제, 주변 교통정리 등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모든 활동
 - ② 현장지휘관은 필요할 경우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때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통합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③ 사고 및 재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휘관의 지휘 범위와 현장지휘소 설치 및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①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은 현장에 인적·물적자원(이하 “자원”이라 한다)이 도착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임무를 부여받아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① 현장지휘관은 사상자 또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현장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연락관은 현장 활동에 있어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휘권 이양)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권을 이양할 때 원활한 현장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사항에 관하여 활동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활동 평가)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 상황이 끝난 후 총리령 제8장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